

# XR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지원사업 상시공고

XR 소재·부품·장비 개발지원센터에서는 「XR 소재·부품·장비 개발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」의 일환으로 기업의 매출증대 및 XR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9월 7일

XR 소재·부품·장비 개발지원센터장

(재)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## 1. 사업개요

### 사업명

- 1) XR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제품제작 지원
- 2) XR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마케팅 지원

사업기간 : 협약일 ~ 11월 30일(수)

지원대상 : XR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

### 지원내용

- 1) 제품제작 지원
  - (제품고도화) 기존제품 고도화를 위한 성능추가 지원, 기존제품 기능개선 및 샘플제작 지원
  - (예비상용화) 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기능설계, 목업, 금형 등 지원, 아이디어 구현 제품 설계 및 샘플 제작 지원

## 2) 마케팅 지원

- XR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의 매출 향상과 보유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홍보 동영상, 온·오프라인 마케팅, 전자 카탈로그, 특허출원·등록,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, 브로슈어 등 홍보물·마케팅 중점 지원
- XR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의 매출 향상과 보유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국내 전시회/박람회 참가 지원,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위한 수수료 지원

### □ 지원규모

#### 1) 제품제작 지원 : 총 40백만원 이내 / 1개사

| 구 분     | 세부 지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· 재료비   | 신청서 상의 제품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 |
| · 외주용역비 | 기구·회로·디자인 설계, 목업 제작               |
| · 기타    | 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타 비용                  |

#### 2) 마케팅 지원 : 총 60백만원 이내 / 6개사 내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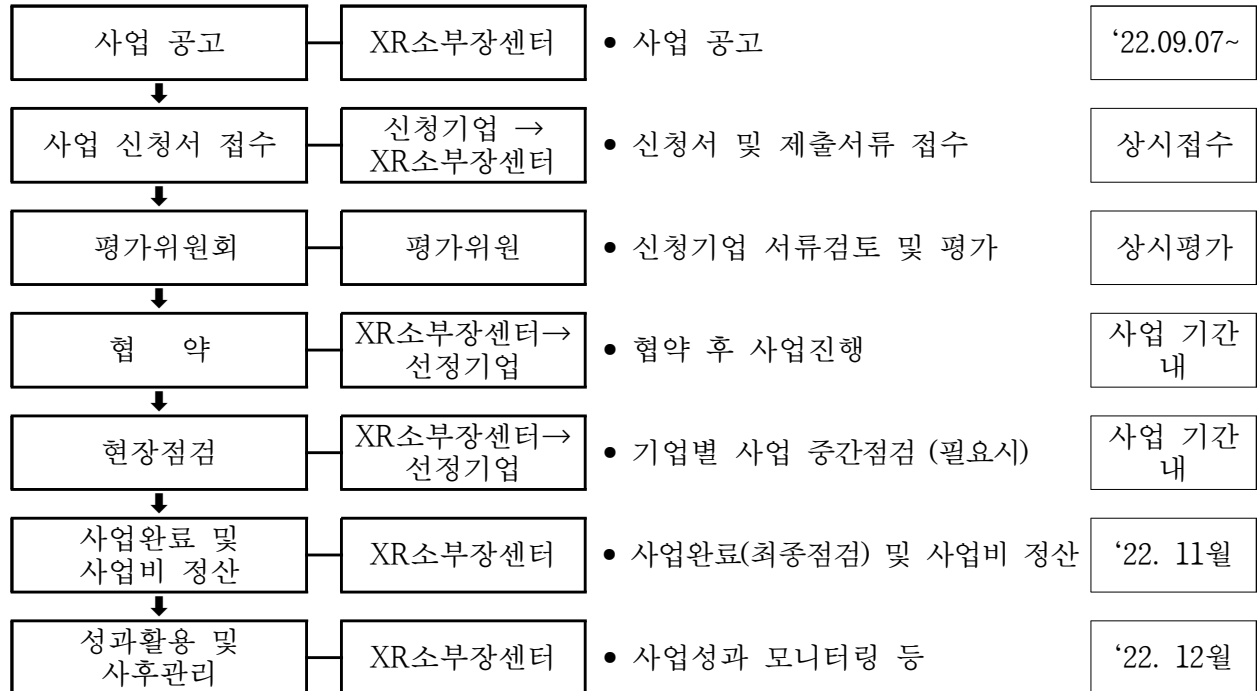
| 구 분   | 세부 지원내용   | 지원규모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내 전시회 지원   | · 부스 입차료/제작비/장치비<br>· 참가 등록비, 운송비, 통역비 등  | 6개사 내외,<br>기업당 10백만원 이내 |
| 홍보물 제작 지원   | · 매체(Youtube 등)를 활용한 홍보동영상 제작<br>· 브로슈어/카탈로그/E-book/기타 인쇄물 제작<br>· CI·BI 개발 등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광고 지원   | ·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위한 언론보도<br>· 마케팅(바이럴, 다중채널네트워크 등)<br>· 온라인 광고(배너광고, 검색엔진최적화, SNS 등)<br>· 기타 온·오프라인 광고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험·인증·특허<br>바우처 지원  | · 기술 및 제품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/인증/분석 수수료<br>· 한국인정기구(KOLAS) 및 해당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<br>· 전자파적합성(EMC) 및 그에 준하는 시험 등<br>· 국내외 특허 출원, 등록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 | · 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기타 지원 등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※협약기간내 행사 참가, 제작 완료, 시험·인증 등 발급 완료 해야함<br>비고) 적정과제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제품제작 지원사업과 마케팅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하며, 신청서는 지원사업별로 작성하여 제출

※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, 구분 항목 2개 이상 선택 필수

## 2. 추진절차

### □ 추진절차



※ ‘코로나19’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이 변경 될 수 있으며, 접수된 모든 과제에 한하여 사전 공지 후 평가 진행 예정입니다.

## 3. 사업신청 및 접수

### □ 공고/접수 : 2022. 9. 7.(수)부터 상시공고 및 접수

- 전북테크노파크([www.jbtp.or.kr](http://www.jbtp.or.kr))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

### □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[jeonyj@jbtp.or.kr](mailto:jeonyj@jbtp.or.kr))

### □ 신청(접수)요령

- ① 사업접수 시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 스캔 후 최종 “\*.zip” 파일명을  
“XR 기업 제품제작 지원사업 신청서류-(기업명)” 또는 “XR 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류-(기업명)” 으로 변경하여 제출

| No. 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   | 지원사업 신청서(직인필수)             | HWP |
| 2   | 기타 제출서류 [별첨. 지원사업 신청양식 참조] | PDF |

[공통사항]

1. 제출서류 PDF 변환 시, 반드시 기본인쇄(1페이지 1쪽)로 설정요망(1페이지 2쪽 변환 불가)
2.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,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이 재요청될 수 있음
3. 각 항목별 서류 제출시 반드시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
4. 제출서류의 미비, 착오 등에 의한 불이익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

□ 문의처 : 전북테크노파크 SW융합팀 전유진 주임연구원

Tel: 063)856-8118 / E-mail: jeonyj@jbtp.or.kr

## 4. 신청절차 및 평가기준

### □ 선정절차

- ① 서면검토 : 제출서류,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, 참여제한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  
※ 제출서류 검증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- ② 선정평가
  -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
  -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고득점순으로 “지원대상”으로 선정 후, 과제별 심의·조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
- ③ 과제선정 :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범위(신청분야별 지원 여부 등) 및 예산 등 심의·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

심의·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,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.

### □ 평가기준

#### ① 서류평가내용

-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
- 지원 기업 및 제품 해당 여부
- ※ 제출서류 검증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
## ② 평가항목

| 평가항목 |           | 평가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|
|------|-----------|---|-----|
| 1    | 과제 적합성    | ◇ 과제 목적과 신청 제품/ 기업과의 적합성                  | 25  |
| 2    | 지원 필요성    | ◇ 지원 기업 및 제품의 지원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| 20  |
| 3    | 시장성 및 기술성 | ◇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<br>◇ 기술의 완성도 및 적합성        | 25  |
| 4    | 수행기업 역량   | ◇ 지원 목적의 명확성 및 시의성<br>◇ 대표자의 사업화 의지 및 전문성 | 10  |
| 5    | 기대 효과     | ◇ 매출 및 고용 증대 등에 대한 기대효과<br>◇ 지역사회 기여도     | 20  |
| 합 계  |           |   | 100 |

## 5. 기타 유의사항

### □ 참고사항

-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필수(필요시 홍보물 등 제작물 요청할 수 있음)
- 결과 보고 후 20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2023년 1월 25일 이후 확정분) 및 2022년 12월 31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
-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
- 부가가치세 기업 부담

### □ 적용 규정 : 본 사업 관련 제반 업무 절차는 아래 규정 및 지침 등 적용

-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
-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
-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
- 정보통신·방송 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
- 정보통신·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

## □ 지원제외 사항 등 유의사항 안내

### ○ 지원제외 사항

| 지원제외 사항  |
|--|
|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<b>지원제외 대상</b> 으로 한다.<br>1. 기업의 부도<br>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<br>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<br>4. 파산,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<br>5.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<br>6.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|

\*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 48조(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)와 관련하여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(기업),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

### ○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

- 타기관의 IPR(지식재산권)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- 동일(유사)과제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
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## □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

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20.1.5.)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(이하 “공공재정지급금”이라 함)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

### ※ 제재부가금

- ① 허위청구(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)  
: 지원금의 5배
- ② 과다청구(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)  
: (받은 지원금 -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)의 3배
- ③ 목적외 사용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  
: 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)의 2배